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692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692호)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개정 내용(식약처 부분)	관련 조항
○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시행: '26.11.12.)	제42조 제83조의6 제83조의7 제92조
○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 · 약사 · 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 · 지정 · 공인 · 추천 ·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(시행: '26.11.27.)	제68조

2. 동 개정법률은 2026년 5월 26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1692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본부(61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5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
(54개 전부서), 관계 기관(단체)

주무관 **손한솔** 사무관 **이경** 의약품정책과 전결 2026. 5. 26.
장 **김춘래**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4562 (2026. 5. 26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21 팩스번호 043-719-2606 / shs3011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